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13.(목) 10:00~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11. 16(금)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2. 11. 19(월)
- 상정·의결일자 : 2012. 12. 11(화)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조성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중소기업육성기금	4,637,079	657,619	-	657,619	5,294,698
옥외광고정비기금	44,098	21,364	-	21,364	65,462
재난관리 기금	773,941	810,500	798,024	12,476	786,417

4. 검토의견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p35)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 2005년도 6월부터 설치하여 적립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치금 4,637,079천원, 이자수입 157,619천원으로 총 5,294,698천원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도시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p40)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로 제정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적립목표액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0천원, 이자 수입 1,364천원, 예치금 44,098천원 총65,462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 기금】 (p44)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3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예치금 회수 773,941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10,000천원, 보조금 465,000천원, 이자수입 35,500천원으로 총 1,584,441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3개 사업에 355,000천원, 소규모 재해해소 사업 423,024천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수정내역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변동조서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